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3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3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3월 20일

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등 `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
시책 사업 추진인력 및 「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」
(행정안전부, 11.9.30.)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를
위한 인력증원과
-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개편을 위한 `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
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64명 → 1,586명(+22명)

○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
- 일반직 : 1,250명 → **1,292명(+42명)**
- 6급 이하 : 1,162명 → **1,204명(+42명)**
- 연구직 : 2명 → **3명(+1명)**
- 별정직 : 13명(변동없음)
- 기능직 : 265명 → 244명(△21명)

○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구 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현 행	79%이상	19%이내	2%이내
개 정	82%이상	17%이내	1%이내

○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867,097천원 정도

- 일반직 정원증원 : 60,469천원 × 13명 = 786,097천원
※ 인건비 기준 :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
- 사회복지직 증원 (9명) : 81,000천원
※ 1인당 인건비 30,000천원기준 70% 국비지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7호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제1항제6의2호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-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 처리지침(행안부예규 제371호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사업인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및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,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정원의 총수는 1,564명에서 1,586명으로 22명이 증가
-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(별표 1)은
 - 일반직 공무원은 79%이상에서 82%이상으로 조정하고, 기능직은 19%이내에서 17% 이내로, 별정직·정무직은 2%이내에서 1% 이내로 조정하였음.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(별표3)은
 - 일반직이 1,250명에서 1,292명으로 42명(6급이하 1,162명에서 1,204명으로)이 증가되고 연구직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으며, 기능직은 265명에서 244명으로 21명 감소되었음.

○ 검토결과

-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신규사무의 증가 및 사회복지직 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,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 종류별,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